##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42

발의연월일: 2025. 5. 19.

발 의 자: 민형배・이개호・정동영

김동아 • 박지원 • 김용민

양문석 • 이성윤 • 소병훈

김성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은행이 '지역균형발전'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.

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.

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인구 분포, 경제력 집중,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.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.

이에, 중소기업은행이 '지역균형발전'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.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,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 확히 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조).

법률 제 호

##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도모함"을 "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중소기업은	제1조(목적)
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(中	
小企業者)에 대한 효율적인 신	
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	
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	
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	
의 향상을 <u>도모함</u> 을 목적으로	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
한다.	<u>에 기여함</u>